

회계학 2부

<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문제 1】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다. 같은 자료에 세무조정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상계하지 말고 모두 표시하시오.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30점)

<자료 1> 다음은 중소기업인 (주)대한의 제22기(2022.1.1. ~ 2022.12.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자료이다.

1. (주)대한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당기순이익	₩400,000,000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250,000,000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270,000,000 ^{*1)}
각사업연도소득금액	₩380,000,000

*1)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따라 손금산입한 금액 ₩150,000,000이 포함되어 있음

2.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전액 국내원천소득에서 발생한 것으로 제10기에 발생한 ₩20,000,000과 제16기에 발생한 ₩30,000,000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주)대한은 미국에 소재하는 A사와 B사에 2021년 초부터 출자하고 있으며, 당기에 지급 받은 배당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동 배당금은 제22기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있음). 직접 납부한 국외원천징수세액과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되었으며, 제20기 외국납부세액 중 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하여 이월된 금액 ₩2,000,000이 있다.

구 분	출자 비율	수입배당금 (국외원천징수 세액 포함)	수입배당금 국외원천징수 세액	소득금액	법인세액
A사	28 %	₩24,000,000	₩5,000,000	₩200,000,000	₩80,000,000
B사	15 %	40,000,000	2,500,000	600,000,000	100,000,000

* A사와 B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님

4. 2022.5.10.에 발생한 화재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대한은 제21기에 대한 법인세 ₩25,000,000(납부지연가산세 ₩5,000,000 포함)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자 산	화재 전 가액	화재 후 가액	화재손실액
건물	₩500,000,000	₩300,000,000	₩200,000,000*1)
토지	300,000,000	300,000,000	-
제품 및 상품	500,000,000	345,000,000	155,000,000*2)
기계장치	300,000,000	200,000,000	100,000,000
계	₩1,600,000,000	₩1,145,000,000	₩455,000,000

*1) 건물 손실액에 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150,000,000의 보험금을 수령함

*2) 제품 및 상품의 화재손실액 중에는 거래처로부터 수탁받은 상품손실액 ₩60,000,000(계약상 배상책임이 (주)대한에 있음)이 포함되어 있음

5. 제22기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8,000,000, 통합투자세액공제 ₩25,000,000, 장부의 기록·보관불성실가산세 ₩2,000,000, 중간예납세액 ₩12,000,000이 있다.

6.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7%이다.

물음 1) <자료 1>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1점)

(1) (주)대한의 감면 후 세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말함)과 최저한세를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구분	금액
감면 후 세액	①
최저한세	②

(2) 최저한세로 인하여 적용 배제되는 조세감면 항목과 당기에 손금산입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실제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한 조세감면의 배제는 경정시 배제순서에 따른다.)

구분	적용배제 항목 또는 금액
최저한세로 인하여 적용 배제되는 조세감면 항목	①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손금인정액	②

(3) (1)에서 계산된 최저한세를 고려하여 (주)대한의 제22기 사업연도 ① ~ ③의 금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구분	금액
간접외국납부세액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②
외국납부세액공제액	③

(4) (1)에서 계산된 최저한세를 고려하여 (주)대한의 제22기 사업연도 재해손실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십시오. (단, 재해상실비율 계산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3) 및 (4)’의 정답과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이 ₩3,000,000,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이 ₩4,000,000이라고 가정할 때 (주)대한의 제22기 사업연도 차감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십시오.

<자료 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민국(중소기업 아님)의 제22기 사업연도(2022.1.1. ~ 2022.12.31.)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1.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20,000,000,000(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 ₩3,000,000,000이 포함되어 있으며, ₩5,000,000,000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임)이며, 관련 세부내역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① 위탁자인 (주)민국은 수탁자가 제22기에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 대하여 판매한 위탁매출액 ₩1,000,000,000을 제23기의 매출로 회계처리하였다.
- ② 영업외수익 중에는 부산물 매각대금 ₩400,000,000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업외비용에는 매출할인액 ₩50,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모두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 대한 것이다.
- ③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80,000,000이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접대비 계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과 목	금 액
①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된 접대비	₩50,000,000
②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된 접대비	5,000,000
③ 건물로 계상된 접대비	65,000,000
계	₩120,000,000

3.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된 접대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건당 3만원 이하	건당 3만원 초과	합 계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1,000,000	₩15,000,000* ¹⁾	₩16,000,000
세금계산서 수취	-	18,900,000* ²⁾	18,900,000
영수증 수취	600,000	3,400,000* ³⁾	4,000,000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	11,100,000* ⁴⁾	11,100,000
계	₩1,600,000	₩48,400,000	₩50,000,000

- *1) 신용카드사용액으로서 제23기에 결제일이 도래하는 금액 ₩1,000,000과 임원이 개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거래처에 접대한 금액 ₩2,500,000이 포함되어 있음
- *2) 거래처에 접대목적으로 증정할 제품 구입액 ₩2,200,000(부가가치세 포함)이 포함되어 있음
- *3) 이 중 ₩2,400,000은 농·어민으로부터, 나머지 ₩1,000,000은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아 거래처에 증정한 것임. (주)민국은 그 대가를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하였으며 법인세 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예정임
- *4)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인 (주)태백에 직접 생산한 제품(원가 ₩10,000,000, 시가 ₩11,000,000)을 접대목적으로 증정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금액임

(차) 접 대 비	11,100,000	(대) 매	출	10,0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1,100,000

(차) 매 출 원 가	10,000,000	(대) 제	품	10,000,000
-------------	------------	-------	---	------------

4. 건물은 2022.7.1. 완공되었고 당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취득원가는 ₩500,000,000이며, 회사는 당기에 ₩50,000,000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 (신고내용연수: 20년, 신고한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5. 수입금액에 대한 적용률은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0.3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 %

물음 2) <자료 2>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1점)

(1) (주)민국의 제22기 사업연도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과 시부인대상 접대비, 그리고 접대비 한도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구분	금액
접대비한도액 계산상 수입금액	①
시부인대상 접대비	②
접대비한도액	③

(2) (주)민국의 제22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무조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자료 3>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만세의 제22기 사업연도(2022.1.1. ~ 2022.12.31.)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1. (주)만세가 제22기에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로 계상한 총급여액 ₩1,150,000,000에는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 ① 당기 중에 퇴직한 직원의 급여 ₩40,000,000
- ② 당기 중에 입사한 직원의 급여 ₩10,000,000(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자에 대한 급여 ₩50,000,000
- ④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6,000,000
- ⑤ (주)만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총무과장이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직원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 지급받은 급여 ₩10,000,000

2. 제22기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충당금		(단위: 원)	
당기감소액	260,000,000	기초잔액	800,000,000*1)
기말잔액	1,000,000,000	당기설정액	460,000,000

*1) 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 ₩650,000,000이 포함되어 있음

3. 당기 중 퇴직급여 ₩260,000,000을 지급하고 회사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퇴직급여충당금	260,000,000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140,000,000
		현금	120,000,000

4.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운용하고 있으며, 제22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관련된 퇴직연금운용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운용자산		(단위: 원)	
전기이월액	850,000,000	당기지급액	140,000,000
당기증가액	230,000,000	차기이월액	940,000,000

5. (주)만세는 퇴직연금을 신고조정하고 있으며, 전기까지 ₩850,000,000이 손금에 산입되었다.

6. 퇴직급여추계액은 다음과 같다.

- 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당기말 현재 재직하는 임직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손금에 산입된 금액 ₩30,000,000은 제외되어 있음)

구 분		일시퇴직기준 추계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가입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기간 추계액	₩755,000,000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미가입기간 추계액	25,000,000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미가입자		40,000,000
계		₩820,000,000

-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당기말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보험수리적기준 퇴직급여추계액)은 ₩820,000,000(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손금에 산입된 금액 ₩30,000,000 포함)이다.

7. 제22기말 퇴직금전환금 잔액은 ₩8,000,000이다.

물음 3) <자료 3>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8점)

- (1) (주)만세의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과 퇴직연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구분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①
퇴직연금 손금산입 한도액	②

- (2) (주)만세의 제22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문제 2】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다. (20점)

<자료 1> (주)P(연결모법인, 지주회사가 아님)와 (주)S(연결자법인)로 구성된 연결집단은 2021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며, 모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주)P의 (주)S에 대한 지분율은 100%이며, 2021년도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주)P의 제22기(2022.1.1. ~ 2022.12.31.) 사업연도와 (주)S의 제12기(2022.1.1. ~ 2022.12.31.) 사업연도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연결집단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22.12.31.	2021.12.31.
(주)P의 자산총액	₩12,000,000,000	₩10,000,000,000
(주)S의 자산총액	6,000,000,000	5,000,000,000
(주)P와 (주)S의 자산총액의 합계액*1)	16,000,000,000	14,000,000,000

*1) 연결법인간 대여금,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거한 후의 금액임

2. (주)P의 2022년의 손익계산서 상 이자비용 ₩50,000,000은 차입금의 이자 ₩48,000,000과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 ₩2,000,00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손금불산입 금액은 없다. (주)S의 2022년의 손익계산서 상 이자비용 ₩30,000,000은 차입금의 이자로 (주)P에게 지급한 이자 ₩10,000,000이 포함되어 있으며 손금불산입 금액은 없다. (주)S와 (주)P 간의 차입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주)P와 (주)S가 2022년에 수령한 수입배당금은 다음과 같다.

배당수령 법인	배당지급 법인	수입배당금*2)	주식의 장부가액*3)	주식취득일	지분율
(주)P	(주)S	₩20,000,000	₩500,000,000	2012.1.1.	100%
(주)P	(주)G*1)	30,000,000	800,000,000	2021.8.27.	20%
(주)S	(주)G	15,000,000	400,000,000	2021.8.27.	10%

*1) (주)G는 주권비상장내국법인임

*2) 배당기준일은 모두 2021.12.31.이며, 2022년의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었음

*3) 주식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상 장부가액과 동일하며 2022년 중 변동 없음

4. 2022.8.1. (주)P는 장부가액 ₩120,000,000의 기계를 (주)S에게 ₩150,000,000에 매각하고 처분이익 ₩30,000,000을 2022년의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였다. (주)S는 해당 기계에 대해 신고내용연수 5년, 정액법, 잔존가치 0으로 감가상각 하였으며, 상각부인액은 없다.

5. 2022.8.27. (주)S는 장부가액 ₩60,000,000의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을 (주)P에게 ₩50,000,000에 매각하고 처분손실 ₩10,000,000을 2022년의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였다. 2022.12.17. (주)P는 (주)S로부터 양수한 금융투자상품 중 80%를 (주)D에게 매각하였고, 20%는 2022.12.31. 현재 보유 중이다.

물음 1) <자료 1>을 이용하여 2022년의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① ~ ④에 기재할 금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10점)

항 목	(주)P	(주)S
1.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 제거		
(1) 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액 익금산입	①	
:		
3. 연결집단내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		
(1)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소득	익금불산입	
	익금산입	②
(2)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실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③
:		
4.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액		
(1) 연결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④
:		

<자료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 (주)A는 2022.9.1.(합병등기일)에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비상장내국법인 (주)B를 흡수합병하였다. (주)A와 (주)B의 사업연도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이다.

1. 합병 직전 (주)B의 재무상태표상 자본은 자본금 ₩100,000,000, 이익잉여금 ₩20,000,00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과 부채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재무상태표 상 금액	시가	유보
유동자산	₩100,000,000	₩100,000,000	
건물*1)	40,000,000	50,000,000	₩5,000,000
기타 비유동자산	200,000,000	200,000,000	
자산합계	340,000,000		
유동부채	80,000,000	80,000,000	
비유동부채	140,000,000	140,000,000	
부채합계	220,000,000		

*1) 건물의 취득일은 2017.10.1., 취득가액은 ₩60,000,000, 신고내용연수 및 기준내용연수는 20년, 유보는 상각부인액이며, 취득 이후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은 적법하게 세무처리 되었다고 가정함

2. (주)A는 합병대가로 (주)A의 신주(액면금액 ₩120,000,000, 시가 ₩160,000,000)를 교부하였다. 합병대가 중 ₩30,000,000에 해당되는 금액은 (주)B의 상호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이다. (주)A는 합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차) 유동자산	100,000,000	(대) 유동부채	80,000,000
건물	50,000,000	비유동부채	140,000,000
기타 비유동자산	200,000,000	자본금	120,000,000
영업권	3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40,000,000

3. (주)A는 합병으로 승계한 건물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으로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합병으로 승계한 건물의 2022년 감가상각비 계상액은 ₩1,000,000이다. 합병 전 (주)A의 기존 건물에 대한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와 동일한 20년이다.

4. (주)A의 2021년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상 자산조정계정(건물)과 합병매수차손의 기말잔액은 ₩0이다.

5. (주)A가 대납하는 (주)B의 법인세 등은 ₩8,000,000이다.

6. 합병 전에 (주)B의 주식(취득가액 ₩40,000,000)을 소유하고 있던 (주)C는 지분율(30%)에 따라 합병대가로 (주)A의 신주(액면금액 ₩36,000,000, 시가 ₩48,000,000)를 받았다. (주)A와 (주)C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물음 2) <자료 2>를 이용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1) 자료의 합병이 적격합병인 경우 (주)A의 2022년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상 자산조정계정(건물)의 기말잔액을 제시하시오.

(2) 자료의 합병이 적격합병인 경우 (주)A의 2022년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상 합병으로 승계한 건물의 상각부인액의 기말잔액을 제시하시오.

(3) 자료의 합병이 비적격합병인 경우 합병으로 인한 (주)B의 양도손익을 제시하시오.

(4) 자료의 합병이 비적격합병인 경우 (주)A의 2022년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상 합병매수차손의 기말잔액을 제시하시오.

(5) 자료의 합병이 비적격합병인 경우 합병으로 인한 (주)C의 의제배당액을 제시하시오.

【문제 3】 다음은 (주)한국의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는 홍길동(남성)씨의 2022년도 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은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천징수 되었다.) (30점)

<근로소득 자료>

구분	금액	비고
기본급	₩50,400,000	월 ₩4,200,000
상여금	28,000,000	연 4회 매회 ₩7,000,000
직책수당	3,600,000	월 ₩300,000
식대보조금	2,400,000	(주)한국은 직원들에게 별도의 식사를 제공함
자가운전보조금	2,400,000	월 ₩200,000 홍길동씨 본인의 소유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였으며, 출장 등에 실제로 소요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주)한국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임
연장근로수당	2,000,000	
연월차수당	1,200,000	
계	₩90,000,000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1. 인적공제자료

가족	나이(만)	소득	비고
모친	73세	-	2022.12.3. 사망
본인	54세	<근로소득 자료> 참조	
배우자	50세	총급여액 ₩5,000,000	장애인
장녀	23세	-	-
장남	20세	-	-
차남	16세	사업소득금액 ₩2,500,000	장애인

* 위의 가족은 모두 2022년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모친은 사망일 전일 현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나이는 2022년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모친은 사망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 것임

2. 2022년도 과세기간 홍길동씨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보험료 ₩2,000,000을 납부하였다.

3. 보험료 지급명세

종류	금액
건강보험료	₩200,000
고용보험료	100,000
생명보험료	1,500,000
계	₩1,800,000

* 위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사용자 부담분 50%를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생명보험료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의 보험료(장애인전용보험에 해당하지 않음)로 동 보험의 만기환급금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음

4. 홍길동씨는 무주택자로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2,200,000을 납입하였다.
5. 홍길동씨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은 다음과 같다. (전년도 대비 증가분은 없음)

구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계
전통시장사용분	₩2,000,000	₩100,000	₩600,000	₩2,700,000
대중교통이용분	200,000	10,000	-	210,00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	-	-
위 이외의 사용분	21,000,000	1,200,000	1,300,000	23,500,000
계	₩23,200,000	₩1,310,000	₩1,900,000	₩26,410,000

6. 의료비 지급명세

구분	금액
본인의 정밀건강진단비	₩400,000
본인의 치료를 위한 한약 구입비	500,000
모친의 입원치료비 및 의약품 구입비	1,200,000
장남의 입원치료비 및 의약품 구입비	12,000,000
계	₩14,100,000

7. 교육비 지급명세

구분	금액
본인의 야간대학 등록금	₩7,000,000
장남의 대학 등록금	12,000,000
계	₩19,000,000

<근로소득공제 자료, 기본세율 속산표 자료>

1. 근로소득공제 자료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2. 기본세율 속산표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6%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15% - 1,080,000원(누진공제액)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24% - 5,220,000원(누진공제액)
1억5천만원 이하	과세표준 × 35% - 14,900,000원(누진공제액)
3억원 이하	과세표준 × 38% - 19,400,000원(누진공제액)
5억원 이하	과세표준 × 40% - 25,400,000원(누진공제액)
10억원 이하	과세표준 × 42% - 35,400,000원(누진공제액)
10억원 초과	과세표준 × 45% - 65,400,000원(누진공제액)

물음 1) 다음은 홍길동씨에 대한 (주)한국의 연말정산 신고서이다. 다음의 양식에 따라

① ~ ⑫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금액이 ₩0인 경우 ₩0으로 표기한다.) (26점)

항목			금액	
총급여액			①	
근로소득공제			②	
근로소득금액				
종합 소득 공제	기본공제	본인공제	③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공제	④	
		장애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⑤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	⑥
			고용보험료	
주택자금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⑦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0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 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500,000	
	자녀세액공제		⑧	
	특별세액공제	항목별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⑨
			의료비 세액공제	⑩
			교육비 세액공제	⑪
결정세액			⑫	

물음 2) 홍길동씨는 2022년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적법하게 하였다. 추가적으로 2022년도에 발생한 기타소득금액 ₩20,000,000(20% 세율로 적법하게 원천징수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음은 2022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자진 납부할 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이다. 다음의 양식에 따라 ① ~ ③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단,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은 ₩4,000,000으로 가정한다.) (4점)

항목		금액
근로소득금액		₩70,000,000
기타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 공제	기본공제	3,000,000
	추가공제	3,000,000
	연금보험료공제	3,000,000
	특별소득공제	3,000,00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000,000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0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3,000,000
결정세액		①
기납부세액		②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③

【문제 4】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다. (20점)

<자료 1> 다음은 기계장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대한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2.10.1. ~ 2022.12.31.)의 거래자료이다. (단, 제시된 자료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가정한다.)

- 2022.10.1.에 특수관계인인 (주)민국에게 제품A를 ₩10,000,000에 판매하였다. 동 제품의 시가는 ₩7,000,000이다.
- 2022.11.1.에 제품B(시가 ₩20,000,000, 원가 ₩16,000,000)가 거래처에 운송도중 운송회사의 과실로 파손되어 ₩14,000,000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다. 동 제품은 2022.12.31.현재 회사 창고에서 수선대기 중에 있다.
- 2022.12.20.에 국내 수출업자 K사에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100,000의 제품C를 인도하였다. 대금 중 \$50,000는 2022.12.10.에 수령하여 당일 ₩60,500,000으로 환전하였으며, 나머지 \$50,000는 2022.12.31.에 수령하였다. 내국신용장은 2022.12.15.에 개설되었으며, K사의 수출선적일은 2022.12.30.이다.

구분	2022.12.10. (계약일)	2022.12.15. (내국신용장 개설일)	2022.12.20. (인도일)	2022.12.30. (선적일)	2022.12.31. (잔금수령일)
기준환율 (₩/\$)	1,220	1,250	1,300	1,350	1,360

- 2022.12.15.에 거래처의 주문을 받아 제품D를 생산하여 인도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상 대금수령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제품D의 인도일은 잔금 수령약정일과 같다.

구분	대금수령약정일	금액
계약금	2022.12.15.	₩15,000,000
잔금	2023.12.25.	₩15,000,000

- 2022.12.30.에 거래처에 제품E(판매가액: ₩80,000,000)를 6개월 이내 대금결제조건으로 외상판매하고 동 제품을 인도하였다. 거래처가 2023.1.6.에 약정기일보다 조기에 외상대금을 변제하였으므로 ₩3,000,000을 할인하고 ₩77,000,000을 수령하였다.

6. (주)대한은 2022년 중 생산한 제품F를 수입자 검수조건부로 다음과 같이 직수출하였다. 총공급가액은 \$40,000이며, 계약금 \$20,000은 계약일에 지급받아 당일 ₩24,000,000으로 환전하였고, 잔금 \$20,000은 수입자검수일에 지급받았다. 제품F의 수출선적일은 2022.12.20.이다.

구분	2022.12.1. (계약일)	2022.12.20. (선적일)	2023.1.5. (수입자검수일)
대금수령	\$ 20,000	-	\$ 20,000
기준환율(₩/\$)	1,210	1,300	1,380

7. 2022.12.1.에 거래처에 제품G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상 대금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제품G는 2023.6.20.에 인도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구분	계약일(2022.12.1.)	중도금(2023.3.1.)	잔금(2023.7.1.)
대금수령	₩20,000,000	₩20,000,000	₩20,000,000

8. 2022.6.1.에 (주)대한은 다음과 같이 대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제품H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계약을 거래처와 체결한 바 있다. 계약상 제품H는 잔금수령과 동시에 인도하는 조건이며, 대금은 약정일에 모두 수령하였다. 그러나 (주)대한은 2022.12.30.에 매수자인 거래처와 협의하여 당일 제품H를 조기 인도하였다.

구분	계약금(2022.6.1.)	중도금(2022.10.1.)	잔금(2023.1.20.)
대금수령	₩15,000,000	₩15,000,000	₩15,000,000

9. 2022.11.20.에 거래처에 제품I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제품을 인도하였다. 대금 ₩36,000,000은 2022.12.1.부터 매달 초일에 ₩3,000,000씩 총 12회에 걸쳐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물음 1) <자료 1>을 이용하여 (주)대한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2.10.1. ~ 2022.12.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해당란의 금액이 없는 경우 '0'으로 표기하시오.) (10점)

<자료 1>의 항목번호	과세표준	매출세액
1		
.		
.		
9		
합계		

<자료 2> 다음은 과세사업(과일통조림 제조판매사업)과 면세사업(과일판매사업)을 겸영하는 (주)한국(중소기업)의 2022년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주)한국은 2015.1.1.에 설립되었으며, 설립연도부터 과일통조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가정한다.)

1.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구분	2022년 제1기	2022년 제2기		
		7.1. ~ 9.30.	10.1. ~ 12.31.	계
과세사업	₩187,200,000	₩291,200,000	₩395,200,000	₩686,400,000
면세사업	62,400,000	156,800,000	196,800,000	353,600,000
계	₩249,600,000	₩448,000,000	₩592,000,000	₩1,040,000,000

2.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2022년 제2기)

구분	2022.7.1. ~ 2022.9.30.	2022.10.1. ~ 2022.12.31.	계
과세사업	₩18,000,000*1)	₩22,000,000	₩40,000,000
면세사업	7,000,000	11,000,000	18,000,000
공통매입세액1 *2)	6,000,000	9,000,000	15,000,000
공통매입세액2 *3)	10,000,000	12,000,000	22,000,000
계	₩41,000,000	₩54,000,000	₩95,000,000

- *1)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2,000,000이 포함되어 있음
- *2) 공통매입세액1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음
- *3) 공통매입세액2는 면세사업용 과일을 보관하기 위하여 2022.7.10. 착공하여 2022.12.25. 완공한 저온창고 신축관련 매입세액임. (주)한국은 저온창고 시설 중 일부를 타업체에 임대할 예정임. 저온창고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제2기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사용면적(과일판매사업: 300m², 임대사업: 200m²)으로 안분 계산하였으나 2022.12.31.에 실제사용면적(과일판매사업: 350m², 임대사업: 150m²)이 확정되었음

3. 2022년 중 과세사업(과일통조림 제조판매사업)과 면세사업(과일판매사업)에 사용될 면세농산물인 과일의 매입과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다. 2021년 제2기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과일의 재고는 없으며,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확정신고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주)대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의한 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4/104이며,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의 기준금액은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정한다.)

구분	매입	사용		기간말일 재고*1)
		과일통조림 원료	과일판매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1.1. ~ 6.30.)	₩140,000,000	₩104,000,000	₩36,000,000	-
2022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 (7.1. ~ 9.30.)	230,000,000	118,300,000	61,700,000	₩50,000,000
2022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 (10.1. ~ 12.31.)	258,900,000	198,900,000	110,000,000	-
계	₩628,900,000	₩421,200,000	₩207,700,000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음

4. (주)한국은 과일판매사업에만 사용하던 운반용 트럭을 2022.7.1.부터 과일통조림 제조판매사업에도 함께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동 트럭은 2021.6.1.에 취득하였으며, 취득시 공급가액은 ₩60,000,000(2022.7.1.현재 장부가액 ₩44,000,000)이며 매입세액불공제되었다.

물음 2) <자료 2>를 이용하여 (주)한국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와 확정신고시, ① ~ ④의 금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8점)

구분	예정신고시	확정신고시
(1)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41,000,000	₩54,000,000
(2)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①	③
(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②	④
(4) 매입세액 공제액 : (1) + (2) - (3)		

<자료 3> 개인사업자 甲은 음식점업(부가가치율 15%)과 숙박업(부가가치율 25%)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이다. 다음은 간이과세자 甲의 2022년 과세기간(2022.1.1. ~ 2022.12.31.)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단, 甲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과세기간 중 사업별 공급대가

구분	공급대가	공급대가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음식점업	₩42,000,000	₩15,000,000
숙박업	28,000,000	10,000,000
계	₩70,000,000	₩25,000,000

2. 음식점업과 숙박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비품을 공급대가 ₩5,000,000에 매각하였다.

3.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 내역

구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비고
음식점업	₩15,000,000	₩1,500,000	공급가액 중 ₩1,000,000(부가가치세액 ₩100,000)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5인승 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지출분임
숙박업	5,000,000	500,000	
계	₩20,000,000	₩2,000,000	

4.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고지납부세액은 없다.

5. 개인사업자 甲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하기로 한다.

물음 3) <자료 3>을 이용하여 개인사업자 甲의 2022년 부가가치세 차가감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을 계산하시오. (2점)